독일, 프랑스 소방차 통행관련 주정차금지 표시

▣ 독일사례 : Brandschutzzone(소방활동공간)

소방차량의 진입, 소방대의 화재진압, 구조구급활동, 소방차량의 통행을 위한 소방활동공간은 절대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며 규정에 정해진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다. 도로교통법상에 규정된 일반적인 절대주정차 금지구역 이외에도 별도의 소방활동공간(Brandschutzzone)이라는 문구표지가 같이 부착되는데, 이것은 소방청사의 소방차량 진출입로, 소방대상물의 진입로, 사다리차 등 소방차량 활동공간의 전면에 주로 설치된다.

주정차금지구역에 소방활동공간(Brandschutzzone)이라는 문구표지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있다면, 이 표지가 있는 곳의 주정차가 소방활동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차차량을 보는 즉시 바로 견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 사례 : 독일 슈투트가르트 소방서 2안전센터 청사 및 주변도로

1. 청사 후정 출입문

차량진출입구 양쪽에 주정차 금지표지판이 있다. 백색화살표는 표지기준 금지구역의 방향이다. 주정차금지표지판 아래에 백색바탕에 'Brandschutzzone'이라고 쓰인 소방활동공간 표지판이 있다.

2. 청사 전면 차고 앞(사진 슈투트가르트 소방서 홈페이지)

모퉁이부터 차고를 지나는 도로 전체에 대해 소방차 출동의 지장이 없도록 입구에 주정차표지판과 소방활동공간 표지가 같이 붙어 있어 전체 도로에 주차하는 차량이 전혀 없다.

3. 소방차량의 진입로

소방대상물로 소방차가 진입해야 하는 입구에 주정차금지표지판과 백색바탕에 적색글씨로 'Brandschutzzone'이라고 쓰인 소방활동공간 표지판이 있다.

3. 소방차량의 부서공간 및 진입로

소방대상물 앞에 사다리차 등 소방차가 부서해서 활동하는 공간과 내부진입하는 입구주변에 필요한 구간에 양쪽으로 일반차량의 주정차를 막는 주정차금지표지판과 백색바탕에 흑색글씨로 'Brandschutzzone'이라고 쓰인 소방활동공간 표지판이 있다. 화살표는 금지구간방향을 표시하며 바닥에도 톱니모양의 주차금지 표시가 있다. 톱니모양은 밖으로는 주차가 가능하다.

▣ 프랑스 사례

http://www.jmgcuc.com/2015/03/26/une-mercedes-sur-un-acces-pompier/

http://www.zebra-marquage.com/realiser-marquer-sol-chantier-signalisation-1.html

http://aix-hebdo.over-blog.com/article-les-nouvelles-residences-du-petit-port-en-manque-de-stationnement-74992804.htm

1. 소방차 통행을 위한 주차금지 표지판

	Defense de Stationner : 주차금지 Accés Pompiers : 소방대 통행

2. 소화전을 이용하는 소방차를 위한 공간확보 표시

3. 소방대 통행용 주정차금지구간에 서 있는 법규위반 차량

4. 소방차 방향전환을 위한 공간 표시(ZONE DE RETOURNEMENT)

5. 공동주택 앞 부지(노란선 구획내 소방차 통행관련 주정차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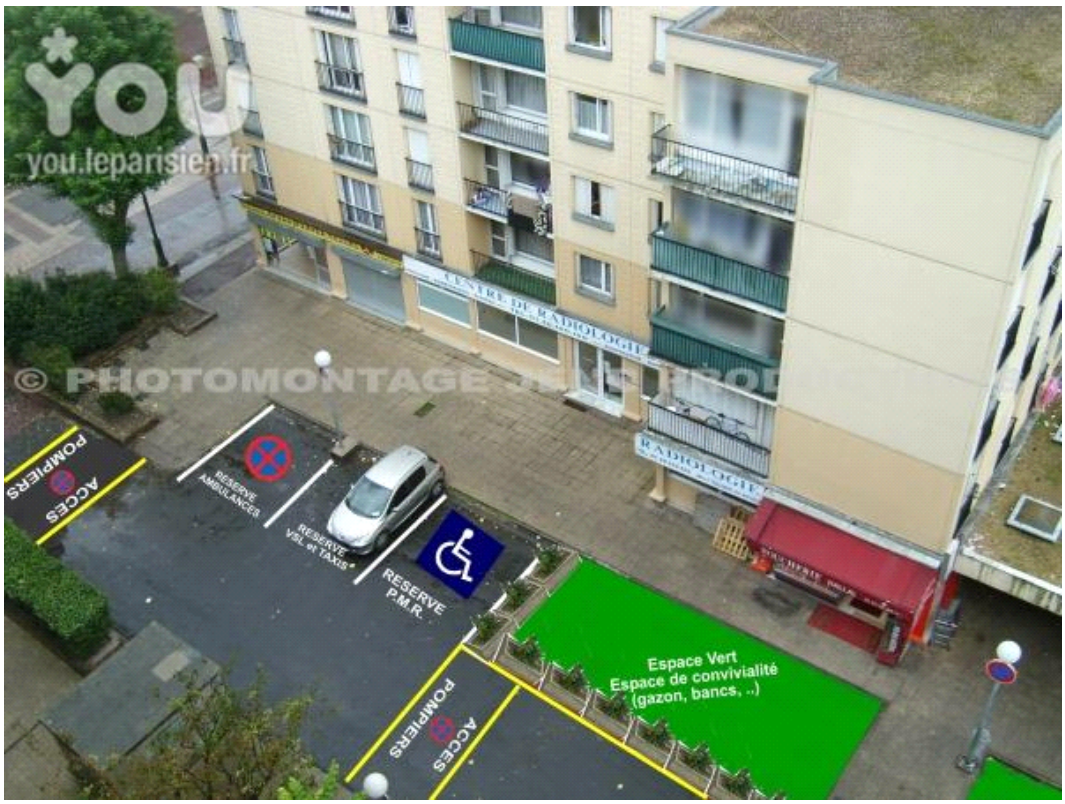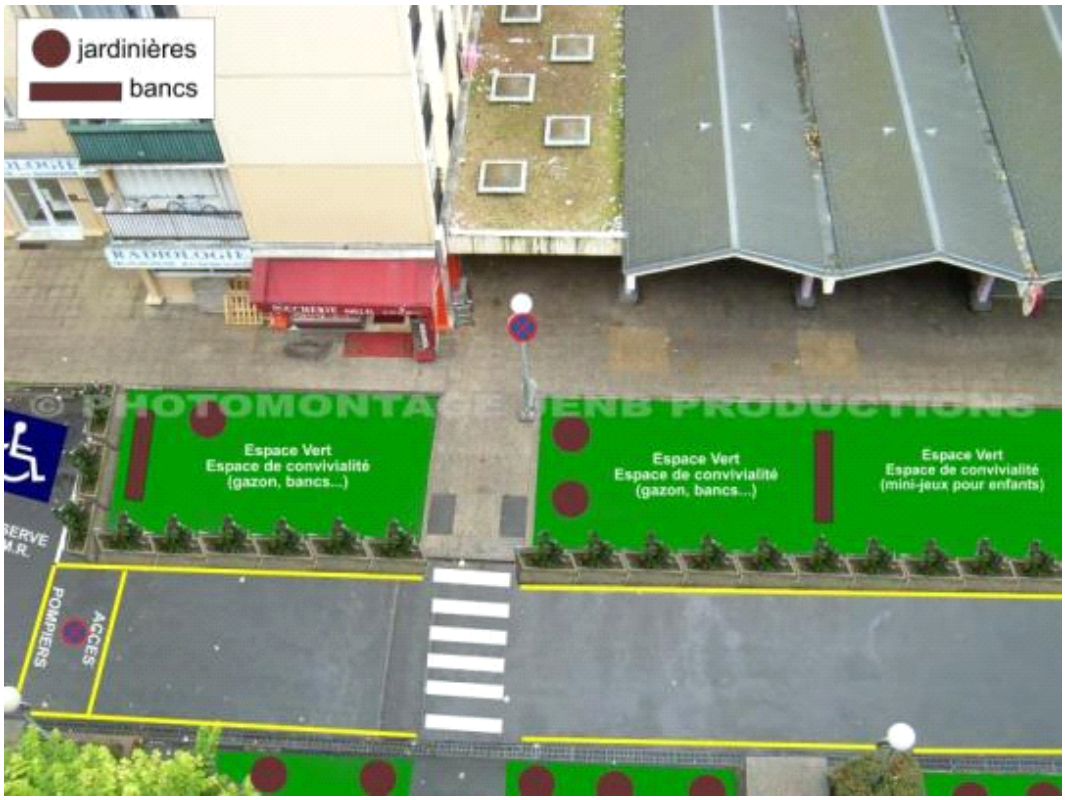
Accés Pompiers(소방대 통행) 글자는 차량이 진출입하는 양쪽 입구 박스안에. 승합차 옆 주차공간은 구급차 출동에 대비하여 별도 주정차금지 설정.